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제19921호) 개정·공포 알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제19921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4.1.2)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조항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 상향 - 종전의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 제28조의2

- 동 개정법률은 2024년 1월 2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제19921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중앙부처(법령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장), 시·도 축산물 관련 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관련단체



주무관 남경우 주무관 유범열 과장 전결 2024. 1. 2. 김성일

협조자

시행 축산물안전정책과-37 (2024. 1. 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축산물안전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247 팩스번호 043-719-3270 / nkw98@korea.kr / 대한민국 공개